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21
----------	-------

발의연월일 : 2026. 3. 17.

발 의 자 : 강명구 · 서지영 · 임종득  
김재섭 · 김미애 · 성일종  
이성권 · 김기현 · 김용태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인하여 건축물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비한 안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하여 일반 화재보다 진압이 매우 어렵고, 주로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확산 및 연쇄 폭발의 가능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기존 시설의 보수를 포함한다)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친

환경 자동차의 안정적인 보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문, 방화벽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이하 “방화시설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시설등을 설치(기존 시설의 보수를 포함한다)하려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조제5항에 따른 방화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시설등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설치한 방화시설등이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화시설등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화시설등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 ④ (생략)  <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p>	<p>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문, 방화벽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이하 “방화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u>  <u>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시설등을 설치(기존 시설의 보수를 포함한다)하려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제24조(영업정지 등) -----          -----          -----          -----          -----          -----</p>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  
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3. ~ 5. (생략)

-----  
-----  
-----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6조제5항에 따른 방화  
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 ~ 5. (현행과 같음)